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3 - 99
------------	---------

제출년월일 : 2013.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포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 구성 (안 제3조)

- 3명 이내, 공개모집을 통해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
- 임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 관련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등

나. 직무 (안 제4조)

-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옴부즈만에게 신청한 고충 민원의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 감시·평가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다. 권한 (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제출 등 요구권
-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 행정제도 개선권고 등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 및 점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반영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3. 10. 4. ~ 10. 24. (제출의견 없음)
- 나.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다. 가정복지과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라. 입법예고문 변동내역
 - 1)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2) 제2장 제목을 “옴부즈만의 구성·직무 등”으로 변경
 - 3) 옴부즈만 자격조건 중 제3조제3항제3호를 “5급 이상”으로 변경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13. 11. 5.
-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4.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세제를 반겼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직무 등

제3조(옴부즈만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시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4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3.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계약 감시·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제5조(직무관할) 옴부즈만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마포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마포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3. 마포구의 사무위탁기관(마포구의 위탁사무에 한함)

제6조(옴부즈만 상호간의 관계) 옴부즈만은 각각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되, 합의제로 운영한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3.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제작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은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이하 “신청인 대표”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신청한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무당하게 되돌려 보내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기부 또는 만류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자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에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구청장 소속하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와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반려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반려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대표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제1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제21조(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 옴부즈만이 실시하는 청렴계약 감시·평가(이하 “감시·평가”라 한다) 대상은 공공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감시·평가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감시·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옴부즈만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장에게 감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운영계획의 수립) 옴부즈만은 매년 감시·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장 운영지원 등

제24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